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473호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하였으나 일부 현금청산 등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공급계약 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, 공공주택사업자가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등도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대행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11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시, 현금청산 이탈 등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보상자가 당초 보상면적의 최대 130%의 면적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(안 제7조)
- 나. 주상복합용지의 공공사전청약 시행근거 마련 및 타 개발 사업에서도 지구계획 단계에 준하는 단계에서 공공사전청약 가능하도록 개정(안 제13조)
- 다.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13조)

#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공공택지기획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 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○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5동 국토 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

ㅇ 팩스: 044-201-5659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(044-201-4441,45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